

##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9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/ 0.

제출자 : 달성군



### 1. 개정이유

- 쓰레기 배출원인 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주민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함.
-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.
- 폐기물 불법·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,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함.

### 2. 근거법령

- 폐기물관리법 제13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- 지방자치법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### 3. 주요골자

-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재활용 선별장 운영까지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12조 제1항)
- 폐기물 불법·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함(안 제14조의2)
-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삭제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15조 내지 제17조)
- 쓰레기 수거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(안 제18조 제3항 별표)

### 4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【별지 제7호 서식】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 제3항 중 "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업자"를 "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"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)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·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기준은 【별표4】와 같다.

제15조 내지 제17조를 삭제 한다

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4】

## 불법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(제14조의2관련)

(단위 : 만원)

행위	과태료	포상금 (과태료의50%)
●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	5	2.5
● 비닐봉지·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	10	5
●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	10	5
● 휴식·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	20	10
●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	50	25
●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	100	50

## 【별표 6】

## 쓰레기봉투가격(제18조관련)

용량별 (ℓ)	5	10	20	30	50	100
판매가격 (원)	120	220	430	640	1,050	2,080

## 【참고자료】

## 쓰레기봉투가격 대비표

(단위 : 원)

구 분	5ℓ	10ℓ	20ℓ	30ℓ	40ℓ	50ℓ	75ℓ	100ℓ
현 행	100	190	370	550	720	900	1,340	1,790
개정안	120	220	430	640	-	1,050	-	2,080

## ※ 타구청 인상 현황

구 분	중구	동구	서구	남구	부구	수성구	달서구
인상일시	99.7.1	99.10.1	99.7.1	99.8.1	99.7.1	99.7.1	99.7.1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行	개 정 안
<p>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(용기)은 가연성, 불연성, 재활용으로 구분·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재활용품 보관시설(용기)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, 병류, 캔류, 플라스틱류, 고체쓰치로풀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·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(용기)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,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의 투입구 폐쇄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공원,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, 재활용분리수거함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을 보관시설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 (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)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, 공원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·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,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li> </ol>	제16조 <삭제>

현 행	개 정 안
<p>3.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,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7조 (생활폐기물 적환장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, 쓰레기 발생량, 교통장애여부,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【별지 제8호 서식】에 의거 적환장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주 2회이상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군수는 교통장애,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(콘테이너)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등의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④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정·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</u></p>	<p>제17조&lt;삭제&gt;</p>